美 금융규제 완화법 「S.2155」 주요내용

2018년 7월 10일
기획조사실 서영미

요 약

□ **(금융규제 완화배경)** 美정부는 금융위기후 대마불사 차단과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10.7월 SIFI 감독 강화, 볼커룰 도입, 소비자금융보호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도드프랭크법'을 제정·시행해왔으나,

○ 이후 트럼프행정부는 과도한 금융규제가 은행권 및 기업 자금조달을 위축시켰다고 비판, '18.5월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S.2155)'을 제정하며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규제들을 완화

□ **(S.2155 주요내용)**

○ **(대형은행)**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받는 SIFI 기준을 자산 500억달러에서 2,500억달러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중앙은행 예치금을 레버리지 비율에서 제외하는 등 건전성 규제 완화

○ **(지역은행)** 자산 100억달러미만 은행에 대해 볼커룰 적용을 면제하고, 레버리지비율 기준에 부합하는 은행은 여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 주며, 중소은행의 감독당국 보고 및 검사부담도 완화

○ **(소비자보호)** 신원도용 의심시 무료로 신용정보를 동결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군인 및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 **(모기지)** 자산 100억달러미만 은행에 대해 적격모기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모기지대출 인허가 기준 및 공시 규제 등도 완화

○ **(자본형성)** 소규모 벤처캐피탈펀드(QVCFs)의 투자회사법 적용을 면제해주고, 소액공모 규정인 Regulation A+ 적용대상을 확대

Ⅰ 美 도드프랭크법 개요 및 완화 배경

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개요

□ **(제정개요)** 금융위기 이후 美 오바마행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차단과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광범위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월가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Act of 2010, 이하 도드프랭크법)'을 **'10.7월 제정**

* 16개의 편(title)과 541개의 조문(section)으로 구성된 2,300여 페이지 분량으로 약 10개법 신설과 50여개 주요 법 개정 내용을 포함

○ 동 법은 그 자체로 실행력을 갖는 조항과 연방감독기관에 위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 방대하고 복잡한 규제로 **공화당과 업계의 지속적인 반대와 개정 요구**에 부딪혀 일부는 시행까지 상당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일부의 경우 **'17년까지 감독규칙 제정 이행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16.7월기준 이행률 70%)

□ **(주요내용)**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개념을 도입, 이들에 **강화된 감독기준을 적용**하고, 금융안정감시위원회(신설), 금융조사국(신설), 연준 등에 이들에 대한 **감독권한을 부여**

○ **은행** 등의 **자기자본거래**(prop trading)와 **헤지펀드·사모펀드**(PEF) **투자**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 도입

○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장치의 핵심으로서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을 설립**

< 美 도드프랭크법 주요 내용 >

Title	제목 또는 신설 법명	주요 내용
제1편	• Financial Stability Act of 2010	•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신설 • 금융조사국(OFR) 신설 • 연준의 SIFI 감독권한 강화
제2편	• Orderly Liquidation Authority	• 대형 금융회사 특별정리절차
제3편	• Enhancing Financial Institution Safety and Soundness Act of 2010	• 저축기관감독청(OTS) 폐지 및 기능이관 • 연방예금보험제도 개편
제4편	• Private Fund Investment Advisers Registration Act of 2010	• 헤지·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강화
제5편	• Federal Insurance Office Act of 2010 • Nonadmitted and Reinsurance Reform Act of 2010	• 연방보험국(FIO) 신설 • 보험업 규제체계 개선
제6편	• Bank and Savings Association Holding Company and Depository Institution Regulatory Improvements Act of 2010	• 은행지주회사 등의 시스템위험 차단을 위한 감독강화 • 볼커룰 도입
제7편	• Wall Stree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0	• 장외파생상품시장에 대한 포괄적 규제개혁
제8편	•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Supervision Act of 2010	• 지급·청산·결제시스템 감독체계 정비
제9편	• Investment Protection and Securities Reform Act of 2010	• 자본시장 투자자보호제도 정비 • 신용평가회사, 자산유동화시장, 보수체계 및 지배구조 규제개혁
제10편	•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 소비자금융보호기구(CFPB) 신설
제11편	• Federal Reserve System Provisions	• 연준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연준의 긴급유동성 제공 권한제한
제12편	• Improving Access to Mainstream Financial Institutions Act of 2010	• 저소득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접근성 강화
제13편	• Pay It bank Act	• 공적 자금의 회수
제14편	• Mortgage Reform and Anti-Predatory Lending Act • Expand and Preserve Home Ownership Through Counseling Act	• 모기지 규제개혁 및 약탈적 대출 금지
제15편	• Miscellaneous Provisions	• 기타 법 자구수정 등
제16편	• Section 1256 Contracts	• 상동

자료 : 정신동, '도드프랭크 금융규제 개혁과 그 이후'(2018)

나. 금융규제 완화 배경 및 내용

□ **(완화개요) 과도한 금융규제**가 은행권 위축 및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야기했다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후 대선공약대로 '17.2.3일 **도드프랭크법 개정 검토**를 **8번째 행정명령으로 서명**

○ 이후 **높은 수준의 금융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금융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이 **'17.6월 美하원을 통과**

- **美상원**에서는 하원대비 **제한된 범위에서 중소형·지역은행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안**(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이하 S.2155)'을 발표('17.11), **'18.3.14일 동 개정안이 통과**(67대 31로 가결)

○ 이후 美하원 역시 상원의 개정안 그대로 258대 159로 통과('18.5.22)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18.5.24일 최종 서명**

□ **(주요내용)** S.2155는 크게 **6개 title과 54개 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핵심은 기존에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던 **SIFI 기준을 자산 500억달러이상에서 2,500억달러이상으로 상향****한 것임

* (참고) S.2155 구성 참조

** 이에 따라 SIFI에 적용되는 회사수는 기존 38개에서 12개로 감소

○ 아울러 **지역은행 관련 다양한 규제 및 모기지대출 관련 규제를 완화**한 한편, 신용정보나 학자금 대출 등 일부 **소비자 보호 규정은 강화**

< 금융규제 완화법 S.2155 주요 구성 >

구 분	내 용
제1편	• 모기지대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제고
제2편	• (지역은행) 규제완화 및 대출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보호
제3편	• 퇴역군인, 소비자, 주택보유자 보호
제4편	• 일부 은행지주회사 규제 개선
제5편	• 자본형성 개선
제6편	• 학자금 대출자 보호

Ⅱ 금융규제 완화법 S.2155(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 상세내용*

* 동 법을 참고하여 주요내용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기술

가. 대형은행 규제 완화(Title IV)

□ (SIFI기준 상향)

○ 자산 **2,500억달러이상** 은행 등에 대해서만 기존의 **강화된 감독기준**(EPS, enhanced prudential standards)**을 적용**하고, **1,000억달러미만** 은행은 **면제**(Sec.401)

- 다만, 자산 **1,000~2,500억달러** 은행에 대해서는 **연준**이 감독기준 **적용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보유

< 美 대형은행 관련 감독기준(EPS) 완화 주요내용 >

	도드프랭크	개정법안(S.2155)		
	500억달러 이상	2,500억달러 이상	1,000억~2,500억달러	1,000억달러 미만
은행 주관 스트레스 테스트(Company-run stress test)	○ (매반기 최소 3개 시나리오, 100~500억달러 은행은 매년)	○ (정기적 최소 2개 시나리오)	x	x
감독당국 주관 스트레스 테스트 (Supervisory stress test)	○ (매년 최소 3개 시나리오)	○ (매년 최소 2개 시나리오)	○ (정기적)	x
리스크위원회 (Risk committee)	○ (100억달러이상 해당)	○	○	○ (500억달러이상 해당)
통합리스크관리(Overall risk management)	○	○	x	x
유동성 요구조건 (Liquidity requirement)	○	○	x	x
정리계획(Resolution planning)	○	○	x	x
동일 거래상대방 신용한도(Single counterparty credit limit)	○	○	x	x
조건부자본 (Contingent capital)	○	○	x	x
단기부채 한도 (Short-term debt limits)	○	○	x	x
조기개선조치 (Early remediation)	○	○	x	x

자료 : SULLIVAN & CROMWELL LLP

□ (건전성규제 완화)

○ **수탁은행**(custody bank)이 **보완레버리지비율***(SLR,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산정시 자산(분모)에서 **중앙은행 예치금을 제외**(Sec.402)

* 보완레버리지비율(SLR) : 바젤III에 포함된 레버리지비율 규제로 총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 비율

○ 유동성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산정시 **지방채**(municipal bond)를 **레벨2 고유동성자산**(high-quality liquid asset)으로 분류(Sec.403)

나. 지역은행(community bank) 규제 완화(Title II)

□ (볼커룰 면제)

○ **자산 100억달러미만**이면서 **트레이딩 자산·부채가 총자산의 5% 미만**인 은행에 대해서는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는 **볼커룰**(Volcker rule, 도드프랭크법Sec.619) **적용을 면제**(Sec.203)

○ 아울러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헤지펀드나 사모펀드(PEF) 명칭**에 해당 **은행 상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도 **완화**(Sec.204)

□ (건전성규제 완화)

○ **지역은행 레버리지비율**(CBLR, community bank leverage ratio)을 개발, **적용기준**을 現5%에서 **8~10%로 변경하되, 자산 100억달러미만 은행에 대해서는 CBLR 기준이 유지**될 경우 다른 **레버리지 및 위험기반 자본요건을 면제**(Sec.201)

○ 현재 **高변동성 상업용부동산대출**(HVCRE, high volatility commercial real estate)로 취급되는 **상업용부동산의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해 **일반 상업용부동산 익스포저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위험가중 자기자본 요건** 부담을 **완화**(Sec.214)

□ (보고부담 완화)

○ **자산 50억달러미만** 은행에 대해서는 **1·3분기** 제출의무가 있는 **Call Report**(업무보고서)**를 간소화**(Sec.205)

□ (검사부담 경감)

○ **현장검사(on-site examination) 주기**를 12개월에서 **18개월**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대상 은행의 자산기준을 10억달러미만에서 **30억달러 미만으로 상향**(Sec.210)

다. 소비자 보호(Title II·III·VI)

□ (신용정보 관련)

○ 신원도용(identity theft) 방지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등 신원확인을 위해 **전자서명으로 고객동의**를 받는 것을 **허용**(Sec.215)

○ 사기 또는 신용도용 등이 의심되는 소비자에게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가 **최소 1년간 사기경보(fraud alert)를 제공**하도록 하며, **무료로 신용정보를 동결**(security freeze)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Sec.301)

□ (퇴역군인 관련)

○ **퇴역군인의 의료 부채(medical debt) 관련정보**를 **신용보고서**(credit report)에서 **제외**(Sec.302)

○ 퇴역군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리파이낸싱**할 경우 **합리적 수준의 차입비용이 산정**되도록 신규대출 **조건을 제한**하고, 금융회사는 리파이낸싱에 따른 **혜택정보를 제공**(Sec.309)

□ (학자금대출 관련)

○ **보증인(co-signer) 사망 또는 파산**시 자동으로 대출자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는 것을 **금지**하며, **대출자 사망**시 **보증인 의무를 면제**(Sec.601)

○ 대출자가 **회생프로그램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학자금대출 연체 정보를 신용보고서에서 삭제** 가능(Sec.602)

라. 모기지 규제 개선(Title I)

□ (적격모기지 규제 완화)

○ **자산 100억달러미만의 예금기관**에 대해 **신규 적격모기지*(QM, qualified mortgage) 컴플라이언스 옵션**을 제공, 차입자 상환능력 평가, 포트폴리오 요구사항 등 기존의 **엄격한 모기지 관련 규제를 완화**(Sec.101)

* 적격모기지(QM) : 해당 차입자가 상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 모기지 등급으로, 대부기관이 차입자의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하여 결정

□ (감정평가 의무 완화)

○ **농촌지역 모기지**와 관련해 부동산 **감정평가 의무를 면제**(Sec.103)

□ (모기지대출 인허가 기준 완화)

○ **모기지대출사업자**(mortgage loan originators)가 신규 인가를 기다리는 동안 임시적으로 **기존 라이센스로 다른 州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Sec.106)

- 아울러 모기지대출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없는 **예금수취기관이 비은행대출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필요 인가를 득할 때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 (모기지 공시 관련)

○ 차입자에게 **모기지 클로징 전 최소 3일간 공시**해야 하는 기존 의무에 대해, 공시내용이 **차입자에게 유리한 저금리 적용**에 관한 경우 **공시규제를 면제**(Sec.109)

마. 자본형성(Title V)

□ (소규모 벤처캐피탈펀드 등록요건 완화)

○ **투자자 250인 이하, 투자자산 1,000만달러 미만**인 경우 '**Qualifying venture capital funds(QVCFs)**'라는 새로운 유형의 벤처캐피털 펀드로 규정하고, 동 펀드에 대해서는 SEC 등록 등 **투자회사법**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적용을 면제**(Sec.504)

□ (미국령 투자자 보호)

○ 푸에르토리코, 괌, 버진아일랜드 등 **미국령에서 설정된 뮤추얼펀드**에 대해 **투자회사법 적용을 면제**해주던 기존 **규정을 폐지**(Sec.506)

□ (우리사주 공시규정 완화)

○ 회사가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배정**시 발생하는 **추가 공시의무 요건**을 기존 12개월내 5백만달러에서 **12개월내 1천만달러**로 **완화**(Sec.507)

□ (Regulation A+ 적용대상 확대)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fully reporting company***'에 대해서도 **Reg A+***를 적용, **일부 공시의무를 면제**(Sec.508)

* fully reporting company : IPO요건상 또는 자발적으로 SEC에 증권신고서, 기타 공시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기업

** Regulation A+ : 소액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면제해주는 소액공모제도 규정. 현재는 nonreporting company만 reg A+ 적용을 받음

참고 금융규제 완화법 S.2155 구성

구분	내용
Title I	IMPROVING CONSUMER ACCESS TO MORTGAGE CREDIT
Sec.101	Minimum standards for residential mortgage loans.
Sec.102	Safeguarding access to habitat for humanity homes.
Sec.103	Exemption from appraisals of real property located in rural areas.
Sec.104	Home Mortgage Disclosure Act adjustment and study.
Sec.105	Credit union residential loans.
Sec.106	Eliminating barriers to jobs for loan originators.
Sec.107	Protecting access to manufactured homes.
Sec.108	Escrow requirements relating to certain consumer credit transactions.
Sec.109	No wait for lower mortgage rates.
Title II	REGULATORY RELIEF AND PROTECTING CONSUMER ACCESS TO CREDIT
Sec.201	Capital simplification for qualifying community banks.
Sec.202	Limited exception for reciprocal deposits.
Sec.203	Community bank relief.
Sec.204	Removing naming restrictions.
Sec.205	Short form call reports.
Sec.206	Option for Federal savings associations to operate as covered savings associations.
Sec.207	Small bank holding company policy statement.
Sec.208	Application of the Expedited Funds Availability Act.
Sec.209	Small public housing agencies.
Sec.210	Examination cycle.
Sec.211	International insurance capital standards accountability.
Sec.212	Budget transparency for the NCUA.
Sec.213	Making online banking initiation legal and easy.
Sec.214	Promoting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n Main Street.
Sec.215	Reducing identity fraud.
Sec.216	Treasury report on risks of cyber threats.
Sec.217	Discretionary surplus funds.
Title III	PROTECTIONS FOR VETERANS, CONSUMERS, AND HOMEOWNERS
Sec.301	Protecting consumers' credit.
Sec.302	Protecting veterans' credit.
Sec.303	Immunity from suit for disclosure of financial exploitation of senior citizens.
Sec.304	Restoration of the Protecting Tenants at Foreclosure Act of 2009.
Sec.305	Remediating lead and asbestos hazards.
Sec.306	Family self-sufficiency program.
Sec.307	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financing.
Sec.308	GAO report on consumer reporting agencies.
Sec.309	Protecting veterans from predatory lending.
Sec.310	Credit score competition.
Sec.311	GAO report on Puerto Rico foreclosures.
Sec.312	Report on children's lead-based paint hazard prevention and abatement.
Sec.313	Foreclosure relief and extension for servicemembers.

구분	내용
Title IV	TAILORING REGULATIONS FOR CERTAIN BANK HOLDING COMPANIES
Sec.401	Enhanced supervision and prudential standards for certain bank holding companies.
Sec.402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for custodial banks.
Sec.403	Treatment of certain municipal obligations.
Title V	ENCOURAGING CAPITAL FORMATION
Sec.501	National securities exchange regulatory parity.
Sec.502	SEC study on algorithmic trading.
Sec.503	Annual review of government-business forum on capital formation.
Sec.504	Supporting America's innovators.
Sec.505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verpayment credit.
Sec.506	U.S. territories investor protection.
Sec.507	Encouraging employee ownership.
Sec.508	Improving access to capital.
Sec.509	Parity for closed-end companies regarding offering and proxy rules.
Title VI	PROTECTIONS FOR STUDENT BORROWERS
Sec.601	Protections in the event of death or bankruptcy.
Sec.602	Rehabilitation of private education loans.
Sec.603	Best practices for higher education financial literacy.